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유산수리 주체 명확화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64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유산수리 주체 명확화(안 제5조)	2
2. 부칙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4. 13.

다. 회 부 일 : 2026.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은 관리자나 계약에 따라 관리를 수탁받은 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예를 들면, 국가지정유산 내에 위치한 학교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할 지방교육청이 수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방교육청이 현행 규정상 소유자나 관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 의뢰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리 주체를 소유자·관리자, 관리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수리 주체에 대하여도 적정한 수준의 국가유산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Ⅲ. 검토의견

1. 국가유산수리 주체 명확화(안 제5조)

개정안은 국가유산 수리의 주체를 명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u>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u>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신설> ② ~ ⑥ (생략)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u>----- ----- ----- ----- -----. ----- ----- -----. 1. <u>국가유산의 소유자·관리자</u> 2.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u>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수리법」”이라 함) 제5조제1항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 제34조²⁾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함) 제26조³⁾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 소유자를 국가유산 수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유산법」 제33조⁴⁾ 및 「자연유산법」 제25조⁵⁾에서 국가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자의 선임 등)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문화유산법」 제34조 및 「자연유산법」 제26조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국가유산수리법」 제5조제1항의 국가유산 수리의 주체는 소유자 및 관리단체로만 규정되어 있어,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은 관리자나 계약에 따라 관리를 수탁받은 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리 주체를 소유자·관리자, 관리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수리 주체에 대하여도 적절한 수준의 국가유산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한편 「문화유산법」 제21조⁶⁾ 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와 같은 법 제28조⁷⁾, 제30조⁸⁾ 및 제32조⁹⁾ 등에서 국가유산 지정고시, 지정 효력 발생

②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그에 대리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보존·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유산과 국유 외의 지정문화유산 및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유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

시기, 임시지정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대상에 관리자 외에 점유자를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를 하고자 할 때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주체를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아닌 자에 대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계승하기 위한 「국가유산수리법」의 도입 목적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①안 제5조제1항제1호의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규정된 ‘관리자’와 동일하게 해석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임시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z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유산(이하 “임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국가유산수리의 대부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9조¹⁰⁾에 따라 소유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 및 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발주자’를 추가로 명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부칙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려는 것이나, 개정법과 관련되는 하위법령 개정 등 연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80

10)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9조(계약) ① 모든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계약 및 사업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